



제 418국회 (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추가〉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1223호)

2024.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 옥 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추가	2
※ 참고자료	9
1. 아이돌보미 우선 연계 현황(2023년 기준)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1.

다. 회 부 일 : 2024.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7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추가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¹⁾의 자녀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u>7.·8.</u> (생략)	<u>8.·9.</u>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 4. (생략)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과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분하여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라)²⁾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임.

특히, 현행법³⁾은 양육공백 발생 가능성이 큰 사회적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자녀,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인해

2) <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시간제(0~12세, 시간당 11,630원)				영아종일제 (시간당 11,630원)	
		취학전		취학후		0 ~ 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85%)	1,744원 (15%)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20%)	9,304원 (80%)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 ㉠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이하 청소년(한)부모 0~1세 가정 이용요금의 90% 지원

3)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3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7.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8.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을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4)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사회 부적응,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자격요건별 가점제 적용⁵⁾에 따라 우선제공 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7조(보호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등)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삭제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 「2024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에 따르면 법에 따른 우선순위 요건에 해당될 때마다 가점을 5점씩

상요건에 복수로 해당하는 취약계층일수록 우선 연계될 가능성이 높
아지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서비스 연계확률을 높이는 실익이 있을 것
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⁶⁾에서는 어린이집 보육의 우선 이용 대상을 ‘「북한이탈주민

부여하는 자격요건별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음.

- 자격요건에 따른 가점 부여: 법에 의한 우선순위 요건(9개)에 해당될 때마다 가점 5점 부여

- ①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의 자녀
 - ③ 장애부모 가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 가정(5점), 이외 장애는 (3점)]의 자녀
 - ④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형제 사매가 있는 아동
 - ⑤ 맞벌이 가정(취업 한부모 및 취업 예정자 포함) 자녀
 - ⑥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
 - ⑦ 다자녀 가정의 자녀(만12세 이하 3명, 만 36개월 이하 2명)
 -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상이등급 1급~3급 해당 가정의 자녀
 - ⑨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부모의 자녀
- 대기 1개월마다 추가가점 1점을 부여하고, 5개월 이상 대기 시 추가 5점의 대기가점(최대 10점) 부여
* 대기 1개월의 기준은 대기 서비스 신청서 기준이며, 6개월 시점부터 추가 5점 부여

6)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 2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② ~ ③ (생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항 제4호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⁷⁾을 고려할 때 유사한 내용의 법률 간 지원대상의 통일성 측면에서 우선제공 대상자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3.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4.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6.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8.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 ④ (생략)
- 7) 2024년 8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34,140명 중 33,793명이고, 비보호대상자는 347명임.

<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대상 입법례 >

법령	조문	대상내용	지원대상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아동청소년 발명교육 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취약계층의 범위)	피해배상청구 소송 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사회통합전형 운영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정보격차 해소교육의 시행)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 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청구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	민원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한편, 2023년 12월 기준으로 우선연계 이용대상자가 전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의 87.2%에 달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가 확대된다면 그만큼 일반대기자의 대기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을 통해 정착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5년간 보호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률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임.

다만, 모든 ‘우선제공 대상자’를 ‘법’에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이며,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바, 동조 제8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도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통일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탈북여성은 대부분 아무런 연고 없이 사회에 정착하고, 일·육아를 양립해야 하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과 양육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양육의 문제는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비보호대상자의 자녀도 모두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모두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9

[참고자료 1] 아이돌보미 우선 연계 현황(2023년 기준)

○ 전체 86,100가구 중 75,043가구 연계(87.2%)

(단위 : 가구)

연도	합계	한부모	조손 부모	장애 부모	맞벌이	다자녀	청소년	기타 양육 부담	일반	기타
2023년	86,100	14,079	6	1,832	39,779	19,342	5	1,889	7,762	1,406

주1) 기타는 코로나 의료방역특례, '기타 양육부담 가구'는 부·모의 질병, 입원(기요양 포함), 군복무, 재감 등의 사유를 말함.

주2) 우선 연계 대상 요건 중복 시 한부모, 조손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다자녀, 청소년 순(표의 왼쪽부터 나열된 순)으로 집계. 예를 들어, 한부모+다자녀 가구인 경우 한부모로 집계

자료: 여성가족부